



주목할 만한 내용

1. 개인소득세 (PIT)

- 해외 유가증권 양도에 대한 PIT
- 고용주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에 대한 사회보험 납입율 감소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PIT
- Covid-19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지출에 대한 PIT

02. 조세관리

- 호치민에 전자계산서 시행에 관한 제 1832/QĐ-BTC 결정서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부동산의 양도활동에 대한 세무신고

03. 법인세 (CIT)

- 특수관계자와 거래 결정
- CIT 과세소득 확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
- 건설 및 설치활동에 대한 CIT 과세소득 확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

04. 간접세 ("VAT")

- 현물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
- 본사와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VAT 신고

05.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내국 수출입에 대한 FCWT
- 목적지 인도조건 ("DAP")으로 수출가공기업 ("EPE")에 상품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 DDU 조건으로 인도된 재화에 대한 FCWT
- 국제 수송선 임대 계약에 대한 FCWT
- 서비스를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FCWT

06. 무역 및 관세

- 수출생산,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및 불량품; 기존 상태로 해외로 재수출되어야 한 물품; 수입 관세 면제된 고정자산의 부품, 부속품 사용 목적 변경에 대한 세금 정책
- 세관 코드 A12로 신고한 가공을 위한 내국 수입 물품은 수입 관세가 면제되지 않다.
- 수입 관세가 면제된 품목 통보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해외 유가증권 양도에 대한 PIT

베트남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유가증권 양도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 양도가액의 0.1% 세율로 PIT 신고. 납부하며 개인이 거주 또는 임시거주를 등록한 지방의 현지 세무국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8월 30일 제33173/CTHN-TTHT 호 OL)

고용주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에 대한 사회보험 납입율 감소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에 대한 PIT

고용주:

- 12개월간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에 납입율 0%를 (0.5%에서 0%로 감면) 적용한다; 및
- 정부의 2021년 7월 01일 제68/NQ-CP 호 결의서, 제2부, 제1조에 따라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에 납입율 감소로 인해 받은 전체금액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원한다.

해당 수당은 지급 관련 충분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지면 근로자의 PIT 과세소득에 제외될 수 있다.

(Long An 세무국의 2021년 9월 10일 제 2646/CT-TTHT 호 OL 및 세무총국의 2021년 10월 25일 제4102/TCT-DNNCN 호 OL)

Covid-19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지출에 대한 PIT

Covid-19와 관련된 일반적인 유형의 비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출장시 Covid-19 상황에 따라 베트남 및 해외에서 격리 비용: 유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식사, 숙박, Covid-19 테스트, 베트남 입국장소 또는 격리 대상 발견 장소에서 격리 시설에 이동하는 비용, 격리 기간 동안 기타 생활비등;
- 근로자용 Covid-19 테스트 비용 또는 테스트 키트 구매 비용; 및 근로자에게 Covid-19 보호물품 구입 비용 및 "Three in-place" (직원 이 회사 현장에서 머무르고 일해야 함)과 관련된 식사/숙박 비용;

해당 비용은 지급 관련 증빙서류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갖추어진 경우 CIT상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되며 PIT과세소득에 제외될 수 있다

(세무총국의 2021년 10월 27일 제4110/TCT-DNNCN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조세관리



지침 문서

호치민에 전자계산서 시행에 관한 제 1832/QĐ-BTC 결정서

2021년 9월 20일 재무부는 호치민에 전자계산서 시행과 관련 세부 지침을 제공하는 제1832/QĐ-BTC호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본 결정서는 발행날로부터 효력이 있으며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21년 11월 1일부터 조세행정법, 계산서 및 관련 서류에 대해 규정하는 제 123/2020/NĐ-CP 호 시행령 및 제 78/2021/TT-BTC 호 시행규칙에 따라 호찌민시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 경제단체, 가족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계산서가 적용된다. (규정상 부적격의 경우를 제외).

- 호찌민 세무국은 각 적격한 기업, 경제단체, 가족 및 개인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납세자의 적절한 준비를 위해 전자계산서 규정과 관련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시행과정에서 발생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찌민 세무국 및 호찌민에 지역의 세무국의 hotline이 공유될 예정이다.

(재무부의 2021년 9월 20일 제1832/QĐ-BTC호 결정서)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부동산의 양도활동에 대한 세무신고

하노이에 본사를 둔 베트남 기업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Quang Ninh성, Ha Long 시에 주택 양도), 부동산 양도활동에 대한 VAT 및 CIT는 다음과 같이 부과된다.

• VAT:

- ✓ 회사가 총 양도소득금액 (VAT 미포함)에 대한 VAT 세율 2%를 적용하여 (제 156/2013/TT-BTC 시행규칙에 첨부된 05/GTGT호 양식으로) 전자신고하고 해당 부동산 양도활동이 발생하는 지방의 세무국에 세금을 납부한다.

• CIT:

- ✓ 회사가 직접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총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CIT 세율 1%를 적용하여 분기 별 임시 신고하고 해당 부동산 양도활동이 발생하는 지방의 세무국에 세금을 납부한다.

과세연도말에 회사가 모든 영업소득에 대한 CIT를 확정신고 하여 (부동산 양도활동이 발생한 지방에 배분된 CIT 포함) 임시 납부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제 151/2014/TT-BTC 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Form 02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CIT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Quang Ninh 세무국의 2021년 10월 28일 제8500/CTQNI-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세 ("CIT")



지침문서

특수관계자와 거래 결정

회사가 소유주의 납입 자본금의 25% 이상 혹은 당사의 중장기 총부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채무를 조달할 경우 제20/2017/ND-CP호 시행령 및 제132/2020/ND-CP호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된다.

회사가 특수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관계 회사로 결정되는 경우 제20/2017/ND-CP호 시행령 및 제132/2020/ND-CP호 시행령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0월 01일 제37638/CTHN-TTHT 호 OL)

본 OL는 세무총국의 2021년 7월 20일 제2687/TCT-TTKT호 OL와 동일한 견해를 제공한다)

CIT 과세소득 확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점심, 교대 중간식사 및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주택수당 등을 지급한 다는 정책이 있으며 근로계약서, 단체협약서, 재무규정 등 서류에 적용조건 및 지급수준을 명확히 규정할 경우 해당 지출이 CIT 과세소득 확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본 공문의 주목할 점은 급여, 상여금, 수당, PIT 세금 및 국고예산에 납부할 의무적인 보험료의 감소분등 포함한 회사의 시행임금 기금의 결정하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런 지침내용은 2016년 4월 19일 제21071/CT-HTr 호 OL에도 제공되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10월 28일 제16186/CTBDU-TTHT 호 OL)

건설 및 설치활동에 대한 CIT 과세소득 확정 시 공제 가능한 비용

회사가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물품을 구매하고 해당 비용은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CIT 과세소득 확정 시 공제될 수 있다.

회사가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계산서 발행일 이후 날짜로 매입 계산서의 비용을 발생하고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비용이 CIT 상 공제 불가능하고 회사가 정부의 제125/2020/ND-CP호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화·용역 공급업체가 규정된 발행시점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대한 행정위반 제재를 규정하는 제125호/2020/ND-CP호 시행령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1월 01일 제43222/CTHN-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VAT”)



지침문서

현물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

회사가 야전병원에 비품, 기계 및 장비등 현물 기부금을 발생한 경우 이런 비품, 기계, 장비에 대한 매입 VAT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비품, 기계 및 장비를 병원에 인도할 때 당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유사하거나 동등한 상품의 판매가로 매출 VAT를 신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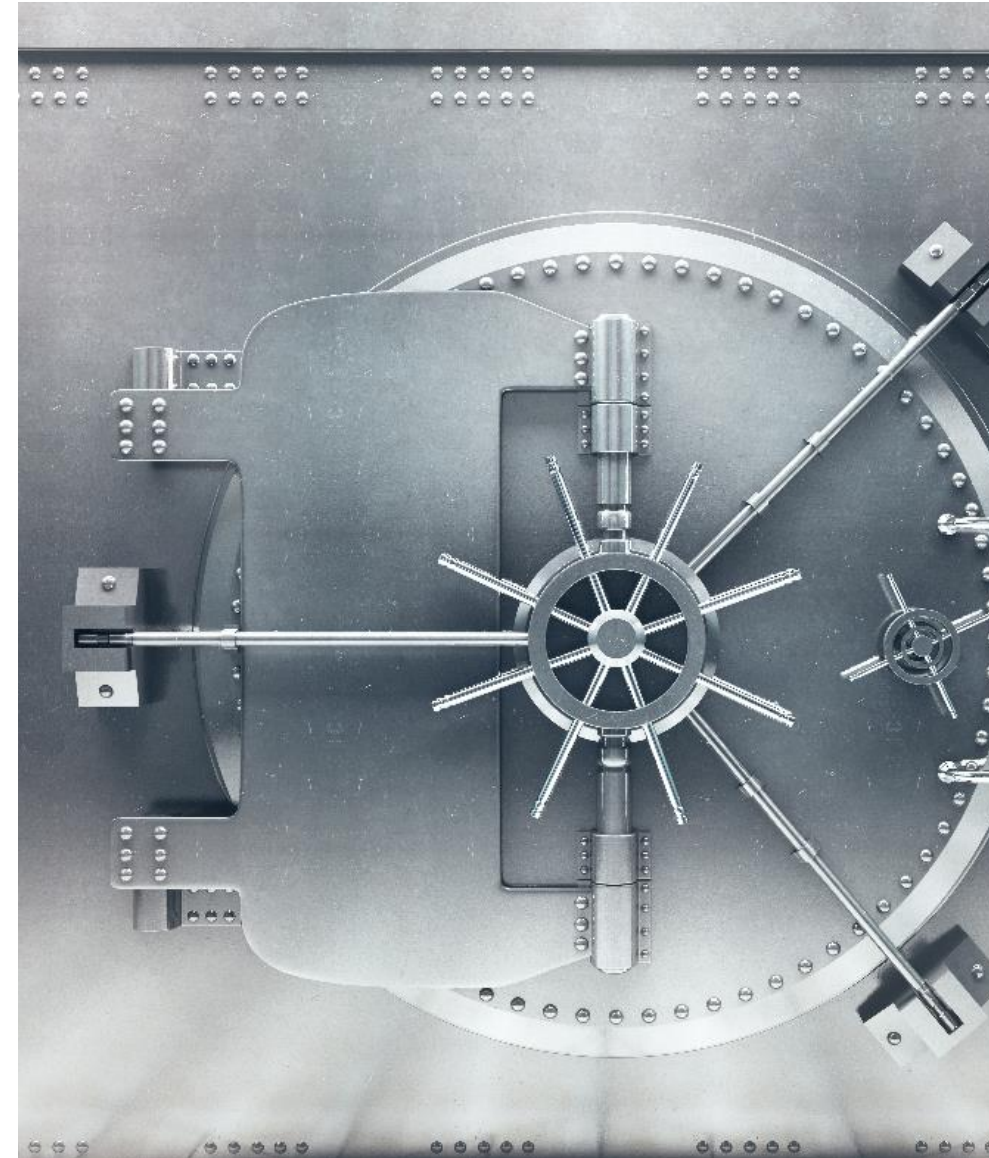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11월 9월 제17062/CTBDU-TTHT호 OL)

본사와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VAT 신고

기업이 다른 지방에 위치한 종속지점에 부동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해당 지방에 위치한 부동산을 양도하도록 위임할 경우 부속지점이 (부동산 영업활동을 시행하는) 해당 지방의 세무국에 공제방식으로 VAT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양도에 대한 VAT 신고 납부는 부동산 양도 활동이 발생하는 지방의 세무국에 수행된다. 기업은 재부부의 2021년 9월 29일 제 80/2021/TT-BTC의 시행규칙, 제13.3조, 제b항에 따라 모든 사업활동에 대한 VAT를 확정하기 위해 본사의 VAT 신고서상 부동산 양도로 인해 VAT 미포함한 소득을 포함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11월 05일 제/44393/CTHN-TTHT 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내국 수출입에 대한 FCWT

베트남에 소재한 회사 A와 해외에 소재한 B 회사 간의 상품 판매 거래에서 회사 B가 지정한 베트남 회사에 화재를 납품할 경우 (내국 수출입) 제103/2014/TT-BTC호 시행 규칙에 따라 **회사B는 FCWT이 부과된다.**

베트남에서 상품을 납품하도록 지정된 회사는 제156/2013/TT-BTC호 시행 규칙에 의한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회사 B를 대신하여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베트남에서 상품을 인도하도록 지정된 회사가 제156/2013/TT-BTC호 시행 규칙에 의한 규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회사 B를 대신하여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1년 11월 3일 제16880/CTBDU-TTHT호 OL)

목적지 인도조건 ("DAP") 으로 수출가공기업("EPE")에 상품 판매로 인한 소득에 대한 FCWT

외국인계약자가 **DAP 인도조건으로** EPE에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 **납품 장소는 국경 관문소가 아니라 EPE이다.** 따라서 EPE에 기계 및 장비 판매로 인한 외국인계약자의 소득은 제103/2014/TT BTC호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FCWT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VAT:** VAT 부과되지 않음;
- **CIT:** 1%.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라 외국인 계약자가 **한국 거주자이며 베트남 회사에 DTA의 1항, 2항 및 3항에서 명시된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 (기계 및 장비)을** 판매하여 소득을 얻을 경우 베트남에서 해당 소득세가 면제된다. DTA에 따른 세금감면은 DTA 신청서 제출시점 이전 3년 이내에 발생한 세금에 적용된다.

외국인 계약자가 **DTA에 따른 세금 면제/감면 대상인 경우** 제156/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20조 3항에 따라 **DTA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ac Giang 세무국의 2021년 8월 6일 제3593/CTBGI-TTHT호 OL)

DDU 조건으로 인도된 재화에 대한 FCWT

베트남 회사가 **DDU조건으로 외국인계약자로 부터 기계를 수입하고 납품장소가** 베트남 영토 내에 위치하는 경우 외국인계약자의 기계 판매로 인한 소득은 FCWT가 부과된다.

기계 판매가 **베트남 영토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경우** FCWT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VAT:** 재화의 가치는 규정에 따라 수입 단계에만 VAT가 부과된다.
- **CIT:** 기계 및 장비 공급에 대한 과세소득의 1%.

(Bac Giang 세무국의 2021년 10월 12일 제4782/CTBGI-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cont.)

국제 수송선 임대 계약에 대한 FCWT

베트남 회사가 베트남에서 해외로 재화를 운송하기 위해 국제 운송사와 국제 운송 선박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베트남 회사가 아래와 같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납부할 책임이 있다

• CIT: CIT 과세소득의 2%

• VAT:

- ✓ 운송 활동이 제 219/2013/TT-BTC 호 시행 규칙 제9조 2항에 의한 비현금결제에 대한 계약 및 증빙서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계약자는 VAT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 운송 활동이 제 219/2013/TT-BTC 호 시행 규칙 제9조 2항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외국 계약자는 과세 소득의 3% VAT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 소득은 2016년 5월 9일 제6142/BTC-CST호 지침 OL에 따라 상품 운송을 위한 선박 임대료 및 계약과 관련하여 베트남 회사가 지불해야 한 요금 및 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이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1년 9월 7일 제2287/CTHPH-TTHT호 OL)

서비스를 수반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FCWT

외국인계약자는 원자재 및 상품을 제공하는데 베트남 영토 내까지 인도하는 경우 (제 103/2014/TT-BTC 호 시행 규칙 제2조 5항에 규정된 경우 제외); 또는 상품 판매는 서비스 가치가 총 계약가격에 포함되지 여부와 상관없이 베트남에서 수행되는 서비스 (무료 서비스 포함)를 수반하는 경우 과세처리가 아래와 같다:

• VAT:

- ✓ 상품은 수입 단계에만 VAT가 부과되고 서비스 가치는 VAT가 부과된다;
- ✓ 계약서상 상품의 가치 및 서비스의 가치를 분리될 수 없는 경우(무료 서비스 포함) VAT은 계약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 ✓ 과세소득에 대한 VAT 세율이 제103/2014/TT-BTC호 시행규칙 제 12조 2항 a항에 따라 적용된다.

• CIT:

✓ CIT과세소득은 상품 및 서비스 가치를 포함한 총 계약 가치이다.

✓ 과세소득에 대한 CIT 세율이 제103/2014/TT-BTC호 제 13조 2항 a점에 따라 적용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1년 8월 13일 제31556/CTH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수출생산,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및 불량품; 기존 상태로 해외로 재수출되어야 한 물품; 수입 관세 면제된 고정자산의 부품, 부속품 사용 목적 변경에 대한 세금 정책

1. 수출생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및 불량품의 경우:

제18/2021/ND-CP호 시행령 제 1조 4항, 6항에 따라 기업은 수출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 결함이 있는 완제품이 국내 소비로 이전될 때 수입 관세 납부 및 세관 절차가 면제된다. 그러나 기업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환경보호세(있는 경우)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 기존 상태로 해외로 재수출되어야 하는 수입 물품의 경우:

- 수입 물품이 세관 코드 B13(수입물품 수출)을 사용하여 원래 상태로 재수출된 경우 수입 관세가 환급되며 수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수입 물품이 원래 상태로 재수출되거나 세관 코드 B13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재수출 신고서에 근거하여 관세 당국이 수출 물품이 이전에 수입되었고 미사용, 가공되지 않은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수입 관세가 환급 가능하다.

- 제 134/2016/ND-CP 호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된 세금 환급 절차 및 서류는 제18/2021/ND-CP호 시행령에서 보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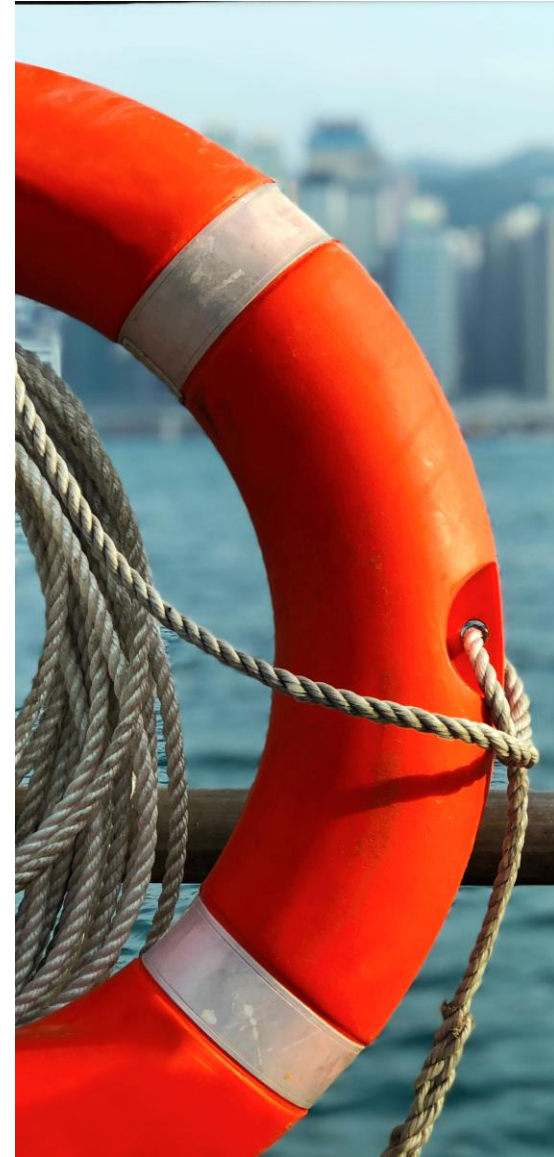
3. 수입 관세가 면제되었던 고정자산인 부품, 부속품 사용목적 변경

- 기업이 고정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수입하고 수입 관세가 면제된 제품의 부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관 신고 및 관세 처리는 아래와 같다:

- 수입 시 각 부품의 이름, 코드가 수입 신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기업은 신규 세관 신고를 등록하고 판매된 부품에 대한 납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 수입 시 각 부품의 이름, 코드가 수입 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아 회사가 사용목적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세관 신고서를 등록할 근거가 없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상품명,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회사는 상품을 국내로 판매하기 전에 관세 당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관세 총국의 2021년 10월 1일 제7252/TXNK-CST호 OL)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cont.)

세관 코드 A12로 신고한 가공을 위한 내국 수입 물품은 수입 관세가 면제되지 않다.

제18/2021/ND-CP호 시행령 제 1조 4항에 따라 내국 수입 물품은 가공용 수입 신고를 등록할 때 수입 관세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면제된다.

- 납세자는 제 69/2018/ND-CP 호 시행령의 조항을 준수하는 가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납세자는 관세 신고서에 임가공계약 부록 및 계약의 접수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및
- 납세자 또는 납세자로부터 위탁 받은 조직 또는 개인이 베트남 영토에 있는 수출 가공 시설 및 기계,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고, 가공 또는 위탁 가공 시설, 가공 계약, 위탁 가공 계약, 가공 계약 부록, 위탁 가공 계약 부록을 관세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따라서 세관 코드 A12로 등록된 내국 수입 물품(국내 제조용 수입)은 기업이 세관 코드 A12에 해당하는 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회사가 아직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조세행정 법규에 따라 추가 신고를 하고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 총국의 2021년 10월 1일 제7251/TXNK-CST호 OL)

지침 문서 (cont.)

수입 관세가 면제된 품목 통보

1. 관세 면제 물품 목록에 관한 통보 사항:

- 수입 물품은 투자 인센티브 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형성하여 수입 관세 면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 기업은 규정에 따라 관세 면제 물품 목록을 신고해야 한다.

- 면세 물품 목록은 정부의 2016년 9월 1일 제 134/2016/ND-CP 호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면세 서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에게 발행한 하노이 인민위원회의 투자 정책에 대한 결정이 여전히 유효해야 한다. 하노이 인민위원회가 기업의 프로젝트 수행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 면세 물품 목록을 통보할 수 없다.

2. 물품 통관 또는 반출:

기업은 제출한 면세 품목에 대해 관세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물품 통관 또는 반출을 하려면 통관 또는 반출 전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관 시 세금 면제되지 않거나 통관 후 환급)

(관세 총국의 2021년 10월 21일 제4979/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Associate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Park Eun Sil
Tax Manager
+84 90 220 4587
eunsipark@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Making an impact since 1991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 2021 Deloitte Vietnam Tax Advisory Company Limited